

 국토교통부		보도 설명자료		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		배포일시	2021. 6. 7.(월) / 총 2매(본문2)	
담당 부서	건설산업과	담당자	• 과장 김광림, 사무관 이동훈, 주무관 김태균 • ☎ (044) 201-3545, 3543	
보도일시	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		

소형타워크레인 안전관리 강화를 지속 추진 중입니다

< 관련 보도내용(한겨레, '21.6.7) >

◆ ‘죽음의 타워크레인’ 퇴출 2개월 만에 현장 돌아왔다.

- 국토교통부는 지난 '20년부터 국내에 등록된 소형타워크레인(원격조종, 1,770대)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*하는 한편 타워크레인의 안전 여부를 검사하는 민간검사대행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**하는 등 소형타워크레인 안전관리 강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.

* (현장 장비점검) '20. 2 ~ 계속('20년 594대 완료, '21년 시행 중)
(형식서류 점검) '20. 5 ~ 계속

** (민간검사대행기관 점검) '20.2 ~ 계속(매분기 실시)

- 그간, 특별점검('20.2~7월)을 통해 결함이 의심되는 타워크레인을 정밀 조사한 결과 일부 기종에 안전울 미달, 구조계산 오류, 용접 불량 등 안전에 직결되는 결함이 확인되었고, '21.2월 대상장비 3개 기종(120대)을 모두 등록말소 조치하였습니다.

- 등록말소 대상 타워크레인의 안전관리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.

- 등록말소 대상 장비가 현장에 쓰이지 않도록 건설현장 사용자제를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으며, 현장에서 완전히 철거 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(긴급점검: 5.31~6.2)을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.

- 아울러, 등록말소 장비가 재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법적절차 외에 제작결합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형식승인 절차를 대폭 강화하여 운영 중이며, 안전성 검증절차의 제도화*를 검토 중입니다.

* 등록말소 대상 장비의 재등록 절차(개선안)

- ① 형식변경 요청 (제작·수입자) → ② [안전성 검증\(제작결합심사평가위원회\)](#)
→ ③ 변경형식승인(건설기계안전관리원) → ④ 신규등록검사 (검사대행기관)
→ ⑤ 재등록 신청 (소유자 → 지자체)

-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장비의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, 앞으로도 제작결합심사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을 경우 등록말소 장비의 변경형식승인이나 재등록을 허용하지 않을 계획입니다.

- 아울러 소형타워크레인에 대한 특별점검과 민간 검사대행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이동훈 사무관(☎ 044-201-3545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